



사회복지관련 정보제공

한양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사 : 성명순

사회복지제도 및 진료비지원체계



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위소득기준

								(단위 : 원)
구 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해당 제도 및 후원처
2016년 중위소득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	6,828,680	
29% 기준	471,201	802,315	1,037,916	1,273,516	1,509,116	1,744,717	1,980,317	기초생활보장 (생계급여)
40% 기준	649,932	1,106,641	1,431,608	1,756,574	2,081,540	2,406,506	2,731,472	기초생활보장 (의료급여)
43% 기준	698,677	1,189,639	1,538,978	1,888,317	2,237,655	2,586,994	2,936,332	기초생활보장 (주거급여)
50% 기준	812,416	1,383,302	1,789,510	2,195,717	2,601,925	3,008,133	3,414,340	기초생활보장 (교육급여)
75% 기준	1,218,623	2,074,952	2,684,264	3,293,576	3,902,887	4,512,199	5,121,510	긴급복지(의료비)지원
80% 기준	1,299,865	2,213,282	2,863,215	3,513,147	4,163,079	4,813,012	5,462,944	재난적의료비지원
100% 기준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	6,828,680	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
120% 기준	1,949,797	3,319,924	4,294,823	5,269,721	6,244,619	7,219,518	8,194,416	
130% 기준	2,112,280	3,596,584	4,652,725	5,708,864	6,765,004	7,821,145	8,877,284	
140% 기준	2,274,763	3,873,244	5,010,627	6,148,008	7,285,389	8,422,771	9,560,152	
150% 기준	2,437,247	4,149,905	5,368,529	6,587,151	7,805,774	9,024,398	10,243,020	

* 재산 및 금융재산도 평가기준에 포함됩니다.

○ 복지업무 처리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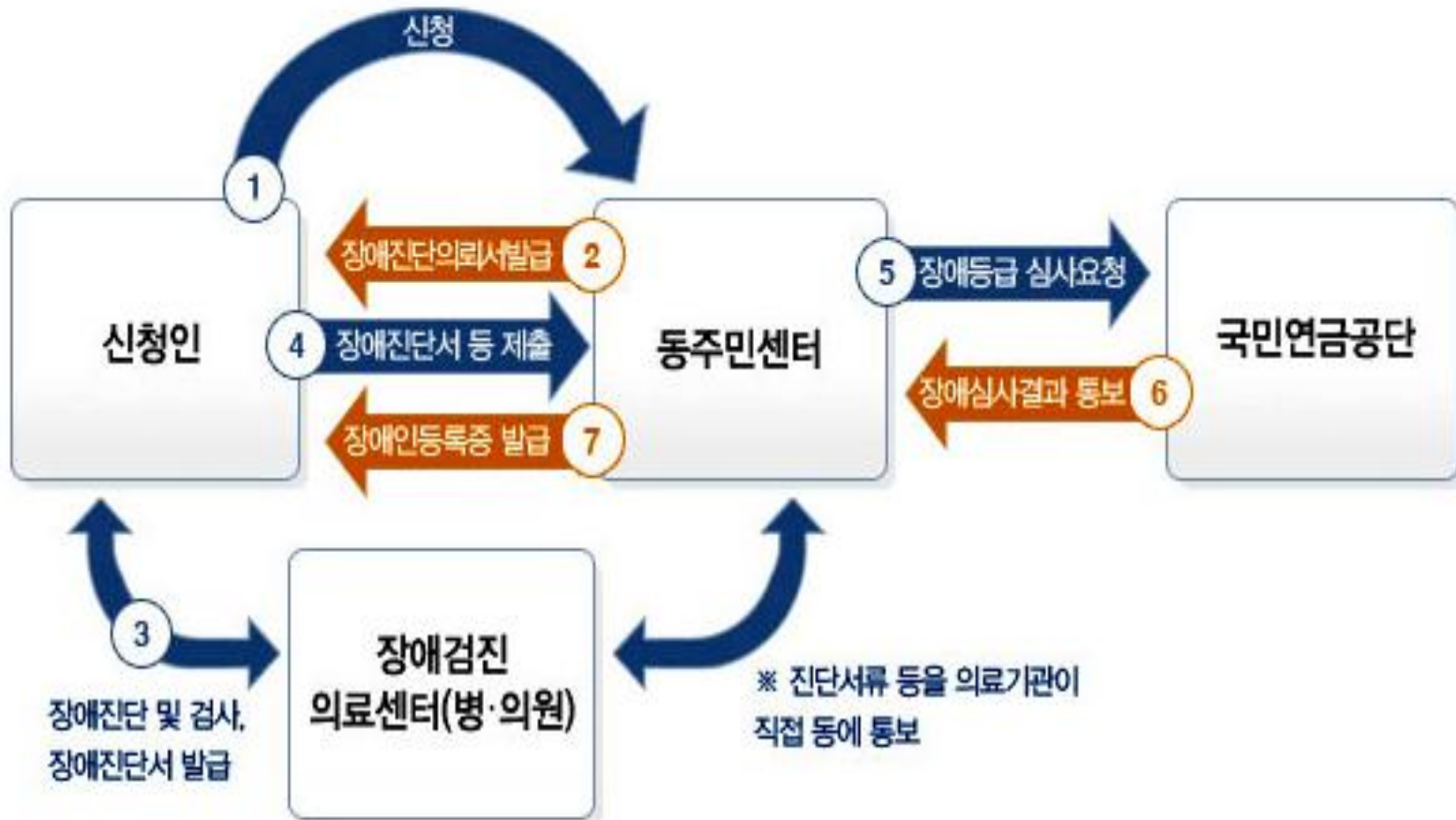


□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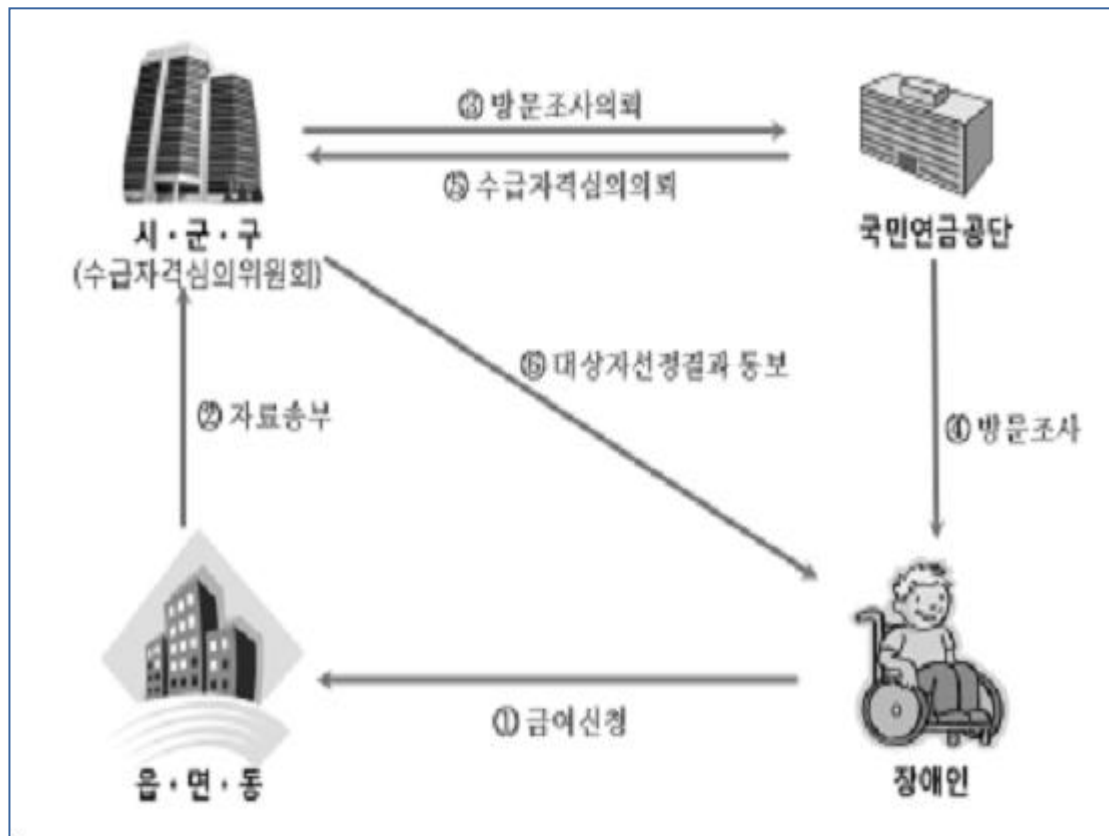
사회보장제도 신청 및 절차

구 분	신청 및 절차	문 의
장애인등록	*동주민센터(서류안내) → 진단서 외 발급(병원) → 국민연금공단(심사결정)	
장애인활동지원	*신청 : 동주민센터 *선정절차 : 동주민센터→관할구청→국민연금공단(심사결정) *제공기관 계약 : 직접계약 (제공기관 문의 :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문의)	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☎1355 www.ableservice.or.kr
장기요양인정	*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	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☎1577-1000
산정특례	*신청서(의사작성) → 원무팀 전산등록(건강보험관리공단) (단, 수급대상자는 병원 직인 날인 후 직접 동주민센터 제출)	
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(H카드 등록)	*관할거주지 보건소 *산정특례 등록된 경우 신청가능하며 재산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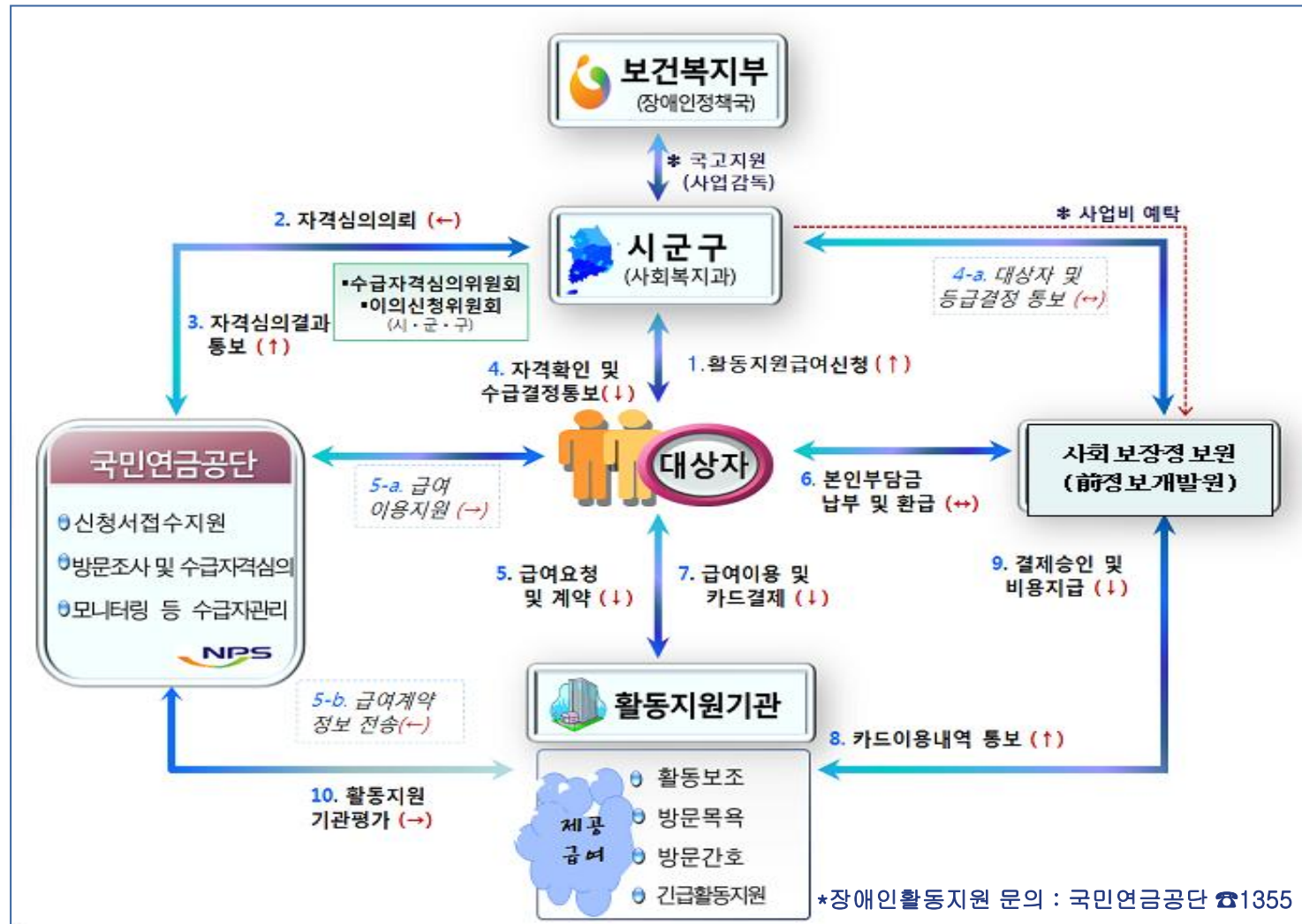
장애인 등록절차



장애인 수급자격 선정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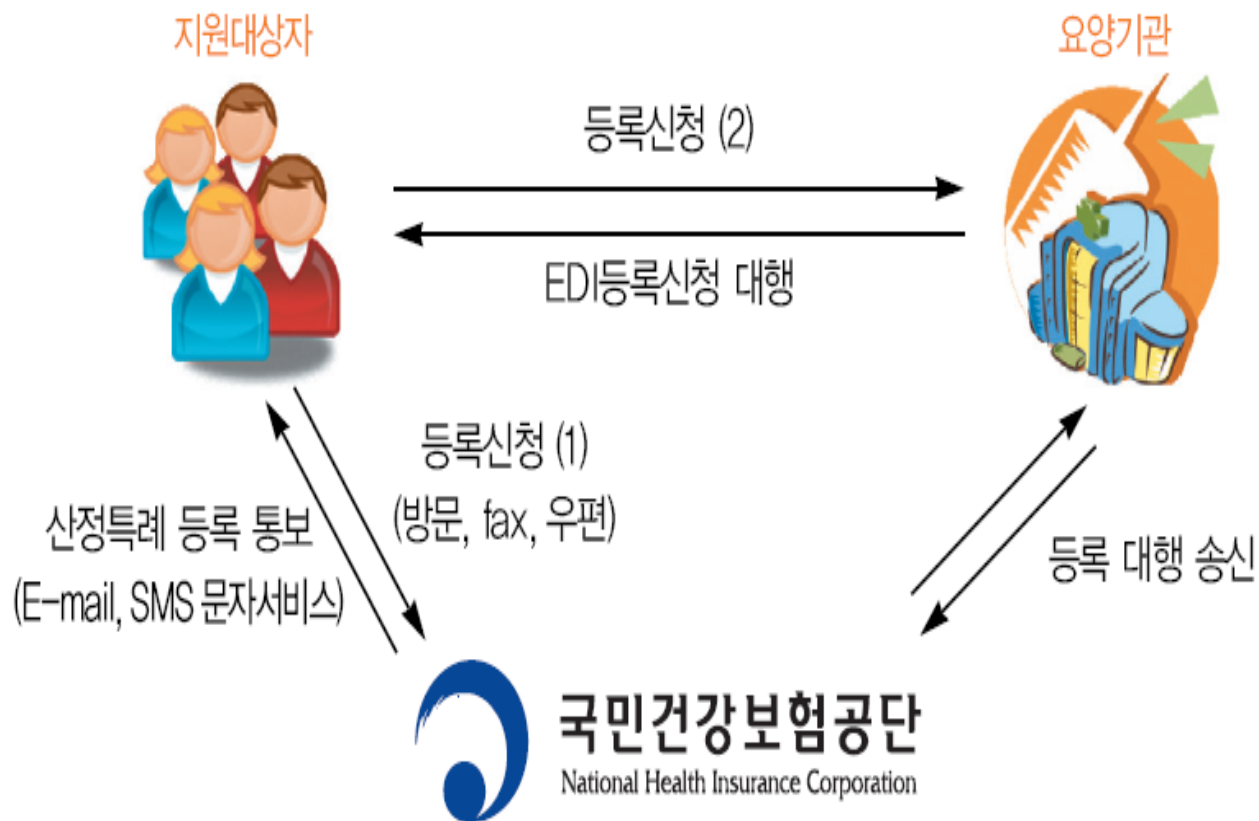


장애인활동지원 사업추진 체계도



산정특례 등록대상자 및 절차

산정특례 등록 절차도



희귀난치성질환자(H카드) 등록신청



등록증 회복비지원사업
http://heline.mh.go.kr

등록증번호

성명

등록일

만료일

보건소장인명

①

②

③

④

- 건강보험가입자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등록증을 발급
- ※ 간병비, 보장구 구입비, 호흡보조기 대여료, 기침유발기 대여료,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등록증 발급 없이 자격관리만 수행

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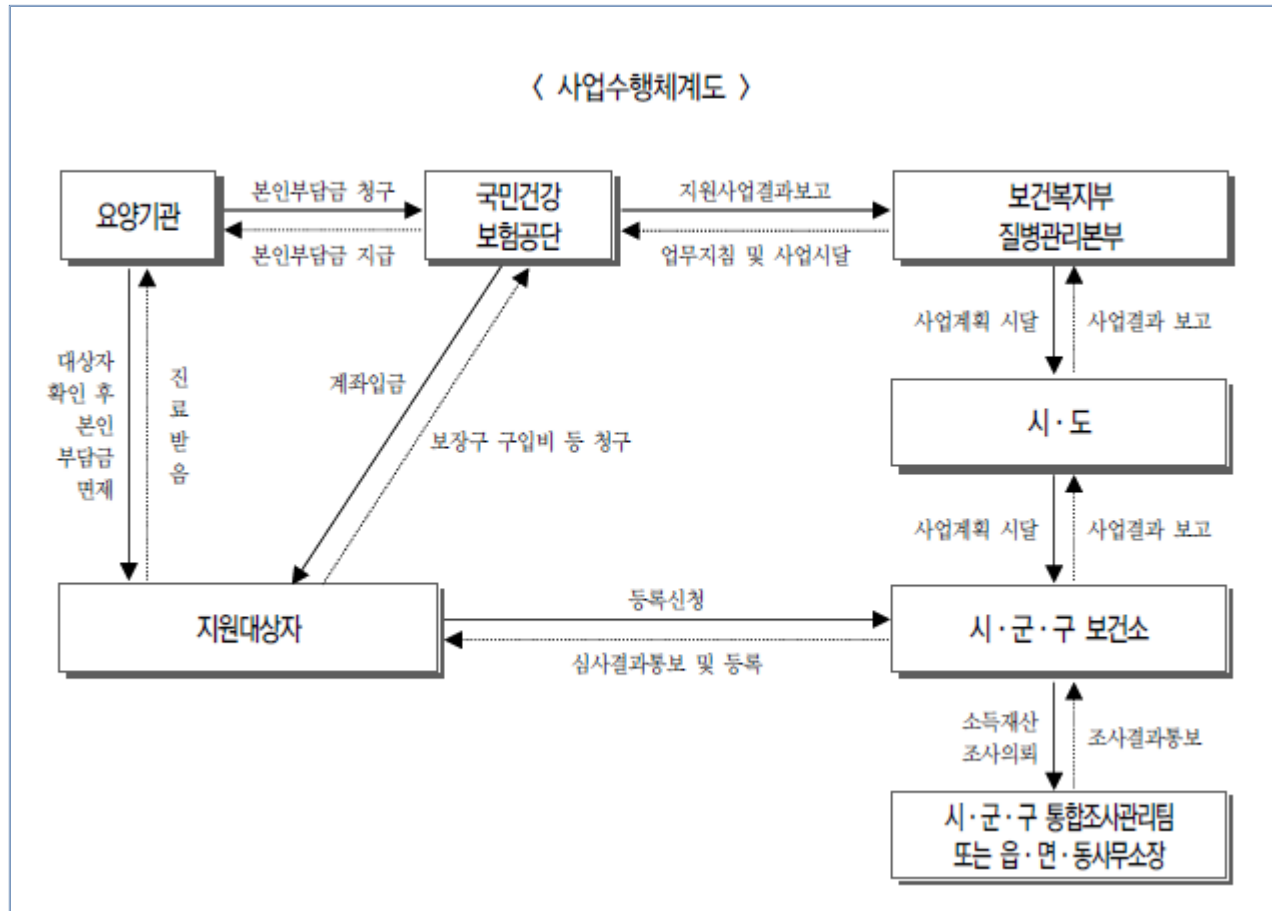
구분	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~2009	2010~2011	2012~2015
예산	예산 (국고·준/ 백만원)	22,641	21,992	26,302	28,533	35,275	39,054	39,124(2007) 37,511(2008) 43,216(2009)	39,013(2010) 32,481(2011)	31,470 (2012~2013) 28,043(2014) <u>28,274(2015)</u>
	대상 질환	4종	6종	8종	11종	71종	89종	111종	132종 1331)종	134종
대상	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·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²⁾	· 만성신 부전증 · 혈우병 · 근육병 · 고셔병	· 만성신 부전증 · 혈우병 · 근육병 · 고셔병 · 베체트 · 크론병	· 만성신 부전증 · 혈우병 · 근육병 · 고셔병 · 베체트 · 크론병 · 다발성 경화증 · 아밀로 이드증	· 만성신 부전증 · 혈우병 · 근육병 · 고셔병 · 베체트 · 크론병 · 다발성 경화증 · 아밀로 이드증 · 유전성 운동 실조증 · 부산비질 영양장애 · 파르병	· 모야 모야병 · 다운 증후군 · 유교 다당증 · 터너 증후군 · 헌팅턴병 · 염색성 다발신 경병증 외	· 간질·속 상태 · 엘커스 증후군 · 파루다발 근육염 · 마르팡 증후군 외	· 다제내성결핵 · 에반스증후군 · 원발성폐성 고혈압 · 인대사상에 외	· 지중해 빈혈 · 레쉬-니한 증후군 · 레녹스-가스토 증후군 · 맨디-워커 증후군 외	· 건선 척추염
						60종 추가한 71종	18종 추가한 89종	22종 추가한 111종	21종 추가한 132종(2010) 133종(2011)	1종 추가한 134종(2012) <u>134종 (2013~2015)</u>

- 1)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건분류 개정에 따라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분류 기준이 변경됨
- 2) '13. 10. 01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요양급여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

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자 신규등록

신청서식	구비서류	
	환자 제출서류	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
① 별지 제1호서식 (희귀·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) - 별지 제1호의2서식 (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·재산 신고서) ② 별지 제4호서식 (희귀·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환자용) - 별지 제4호의2서식 (희귀·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가구원용) ③ 별지 제5호서식 (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)	① 임대차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, 부양의무자가 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) ②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(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할 수 있음) ③ 신청자(환자)의 통장사본 1부 ④ <u>금융재산 관련 서류</u>	① 주민등록등본 ②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③ 소득·재산관계 서류 (해당자에 한함) ④ 산정특례 등록확인 방법에 따라 등록정보 확인 ⁴⁴⁾ ⑤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하여 확인) ⑥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(해당자에 한하여 확인)

희귀난치성질환자 사업수행체계도



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

간병비

- 월 30만원 지급
- 근육병 등 11종 질환자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

의료비

-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-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

보장구 구입비

-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
- 근육병 등 8종 질환자에 한함

희귀난치성
질환자
의료비지원사업

“134종”

호흡보조기 대여료

- 호흡보조기처방전을 발급받아 대여한 호흡보조기 대여료(기계대여료 월60만원 이내, 기본소모품 월10만원 이내,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환자용 소모품 중 택일 연 40만원 이내)
- 근육병 등 10종 질환자에 한함

특수식이 구입비

- 특수조제분유 (월30만원 이내)
- 저단백 헛반 (월14만원 이내)
-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7개 질환자에 한함

기침유발기 대여료

-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(월18만원 이내)
- 근육병 등 10종 질환자에 한함

※ 희귀난치성질환 관련사이트
: <http://helpline.nih.go.kr>

희귀·난치성의료비 & 산정특례 비교

구분	의귀·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	의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	비고
등록대상	저소득(차상위) 및 기초생활대상자	경제적 기준에 관계없이 확진 받은 자	
등록장소	관할 보건소	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행 가능한 병원	
지원항목	본인부담금 오염기대여비 간병비	본인부담금	확진 받은 환자 단, 오염기대여비는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가능
본인부담금비율 (급여부분)	0%	10%	

산정특례 & H등록환자 본인부담비율

항목	급여	비급여	선택진료
진찰료	66,030	0	0
입원료	485,250	0	0
식대	0	0	0
투약료	5,952	0	0
주사료	432,401	11,601	0
마취료	0	0	0
물리치료	0	0	0
정신요법	0	0	0
처치료	120,194	0	0
인공신장료	0	0	0
수술료	1,736,048	0	0
수혈료	154,830	0	0
기브스	0	0	0
임상병리	1,265,910	292,557	3,240
조직병리	0	0	0
검사료	261,477	0	0
핵의학	0	0	0
방사선	1,600,674	0	6,076
치료방사선	0	0	0
초음파	0	455,000	0
C T	0	0	0
M R I	0	0	0
보철/교정	0	0	0
재료대	150,054	198,800	0
제증명	0	0	0
기타, 종검, DRG	0	0	0
계	6,278,820	957,958	9,316

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

- *장기요양인정 신청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- *신청방법 : 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- *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
장기요양인정 신청종류

종류	신청사유	신청시기	제출서류
인정신청	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	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	-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	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	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	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- 의사소견서
등급변경 신청	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	변경사유 발생 시	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- 의사소견서
급여종류 ·내용 변경신청	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	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	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 변경신청서 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이의신청	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	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	- 이의신청서 - 사실 입증서류

•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등급외A 5등급	등급외B, C
요양인정점수	95	75	60	51	45

감사합니다!!

